

감사실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2022. 12.

◆ 목 차 ◆

I. 통일연구원 인권영향평가 개요	1
1. 인권영향평가 개요	1
2. 인권영향평가 지표 확정	3
II.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	4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4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4
3.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5
[붙임1-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내역	8
[붙임1-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내역	17

1. 통일연구원 인권영향평가 개요

1. 인권영향평가 개요

가. 인권영향평가 추진 배경

- 인권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의 인권실천·점검의무의 핵심기제로 인권경영의 주요내용임.
- 통일연구원의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운영과 연구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함.
- 본 평가는 통일연구원의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체크리스트를 통한 두번째 인권영향평가임.(2021년 최초 실시)
- 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기관 내 인권경영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결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통일연구원의 기관운영, 법규,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적용이 필요함.

나. 인권영향평가 실시 개요

- 평가범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기관활동 전반을 보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함.
- 평가대상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체제, 고용, 노동권 등 포괄적 경영관리 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이해관계자에게 영향력이 큰 기관의 연구관리(위탁)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함.
- 수행 프로세스
 - ①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가. 인권경영 상 인권영향평가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기관분석, 지표설계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함.
 - 나. 인권영향평가 대상/평가 주체 등의 평가 실행계획 수립, 교육계획 등을 수립함.
 - ②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근거자료 수집 교육(2022.8.29)
 - 가.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증빙자료 제출을 위한 교육 실시

③ 인권영향평가 평가자료 작성

- 가.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근거자료 작성을 각 부서에 요청
- 나. 지표별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근거자료를 작성

④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가. 지표별 담당부서에서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인권영향평가 실시
- 나. 감사실에서 담당부서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⑤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실시

⑥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 가.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최고경영진에게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 나. 인권침해 방지조치를 수립하여 시행 예정

다. 인권영향평가 지표의 구성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을 기반으로 함.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외부전문가 주도하에 진행된 담당자 인터뷰, 기관분석 등을 통해 개발함.

라. 인권영향평가 방법

〈인권영향평가 실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확정	체크리스트별 근거자료 수집	인권영향평가 실시 (담당부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인권경영 위원회 심의·의결

2. 인권영향평가 지표 확정

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구분	인권영향평가 지표	총계	진단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21					
2	고용상의 비차별	17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4					
4	강제 노동의 금지	5					
5	아동노동의 금지	3					
6	산업안전 보장	12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6					
8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1					
9	환경권 보장	2					
10	소비자 인권보호	3					
합 계		84					

* [정보없음, 해당없음] 항목은 기관에부합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체크리스트 점검단계에서 1차 제외하였음.

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구분	인권영향평가 지표	총계	답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연구계획 수립	2					
2	연구과제 선정	2					
3	연구수행	3					
4	연구관리	4					
합 계		11					

II.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예”의 비율: 89.28%

구분	인권영향평가 지표	총계	진단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21	18	2	-	1	-
2	고용상의 차별	17	15	2	-	-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4	14	-	-	-	-
4	강제 노동의 금지	5	5	-	-	-	-
5	아동노동의 금지	3	3	-	-	-	-
6	산업안전 보장	12	10	1	-	1	-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6	5	1	-	-	-
8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1	1	-	-	-	-
9	환경권 보장	2	1	1	-	-	-
10	소비자 인권보호	3	3	-	-	-	-
합 계		84	75	7	-	2	-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예”의 비율: 100%

구분	인권영향평가 지표	총계	답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연구계획 수립	2	2	-	-	-	-
2	연구과제 선정	2	2	-	-	-	-
3	연구수행	3	3	-	-	-	-
4	연구관리	4	4	-	-	-	-
합 계		11	11	-	-	-	-

3.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① 종합의견

- 통일연구원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범적·제도적인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내용이 준수되고 있음.
 - 총 84개 지표 중 '예' 75개, '보완필요' 7개, '아니오' 0개, '정보없음' 2개, '해당없음' 0개로 기관운영 평가에서 '예'의 비율이 89.28%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2018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권고하고 있는 지표(10개 분야 158개)를 참고하여 연구원의 특성에 맞게 84개 지표로 정리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 2021년 100개 지표 ⇒ 2022년 84개 지표로 정리
 - 매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완업데이트 진행 예정

- 작년에 이어 평가 내용 및 인권경영의 주요 활동을 대·내외적(내부망, 기관 홈페이지)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근거 규정 및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후 실적 및 증빙자료 등을 보완하여 정례적 추진

-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진단되는 이해관계자(내외부 포함)들과의 제도개선에 힘쓰고, 지속적으로 인권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 10개 분야 중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산업안전 보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의 일부 항목 개선과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직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점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할 것임.

② 항목별 개선 의견

구분	인권영향평가 지표	지표번호	항목별 개선과제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1. 인권존중 정책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이행지침에서 감시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음.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조직이 필요 - 인권침해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한 채널 운영 검토 - 구제절차 처리 시한에 대한 구체화 필요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4. 인권경영성과	
		5.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1. 고용상 비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인사 규정 개정 필요사항 점검하여 개정 검토 (혼인 여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시키는 명시적 조항을 추가)
		2. 고용상 남녀비차별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4.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4	강제 노동의 금지	1. 강제노동 금지	-
5	아동노동의 금지	1. 연소자 고용금지	-
		2.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경우의 조치	
6	산업안전 보장	1. 작업장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개정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11.19.)에 따라 원내 사규에 반영 검토(임산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3. 직원안전 및 건강지원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회사와의 계약체결시 협력회사 내 직원의 인권보호 의무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약정서로 개선 필요 - 정기적인 모니터링 점검 필요
		2. 모니터링 실시	
		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8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1. 이해관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
9	환경권 보장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추진방안 마련 검토
		2. 비상계획 수립	
10	소비자 인권보호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
합 계			

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① 종합의견

- 통일연구원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반과제' 수행과정을 중심으로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2021년의 경우에는 연구원이 발주한 외부수행 위탁과제를 대상으로 진행

- 통일연구원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연구사업(일반) 프로세스를 토대로 단계별 업무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음.
 - (계획 수립) 연구수행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연구사업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사전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의신청 절차도 갖추고 있음.
 - (선정) 연구과제 수행기관/수행자 선정시 연구과제관리위원회 명단을 내부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으며, 선정과제에 대한 연구수행 현황은 홈페이지 '사업실명제' 항목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
 - (연구수행) 생명윤리위원회 세부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생명윤리 분야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연구과제 수행에 확대하는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참여의사, 자료수집 방식, 수집된 자료의 활용 동의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리스크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4개 분야 중 「연구관리」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직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점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할것임.

② 인권영향평가 항목별 개선 의견

구분	인권영향평가 지표	업무	항목별 개선과제
1	연구계획 수립	과제배분	-
2	연구과제 선정	심의 선정	-
3	연구수행	연구	-
4	연구관리	평가	- 전체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전 동의 확인 절차 적용을 검토
합 계			

붙임1-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내역

분야	항목	번호	2022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진단결과					비고 (증빙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체제의구축	[1.1] 인권존중 정책선언	1	연구원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					2021년 인권경영 선언식, 통일연구원 인권선언문
		2	인권정책선언은 연구원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					인권경영헌장 및 인권경영규정 제정
		3	연구원은 인권정책선언은 연구원 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					인권경영규정
		4	연구원의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연구원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					통일연구원 인권경영헌장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2021년 전직원 회의시 실시 (인권경영 선언식), 인권경영 선언문 재정정보시스 템 게시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					최초 제정('19.1.28.) 이후 개정(2020.11.2 3.)
	[1.2] 인권영향 평가 정기적 실시	7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					국가인권위원 회 인권영향평가 기관운영 체크리스트 기반
		8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연구원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					인권경영위원 회 내·외부위원 선정 문서, 인권영향평가 시 외부 전문가 참여
		9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최초평가(2021 년), 이후 정례적 실시(2022년)

분야	항목	번호	2022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진단결과					비고 (증빙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	연구원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인권경영 이행지침 규정 제정 결재문서, 인권경영 규정
		11	연구원은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한다.	✓					인권경영체계 업무분장 규정
		12	연구원은 인권준수를 위한 감시기구 및 제도를 운영중이다.		✓				인권경영 이행지침 내 인권침해 구제 제도 운영
		13	연구원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인권침해 구제지침
	[1.4] 인권경영 성과	14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					인권경영위원 회 개최, 인권영향평가 자체 실시
		15	인권경영 개선 활동 성과를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한다.	✓					2021년 인권경영 업무추진 실적보고 결재문서
		16	인권경영 영향 결과는 외부에 공개 한다.	✓					2021년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외부공개
	[1.5] 구제절차 마련	17	연구원의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					인권경영위원 회 위원 인권전문가 포함
		18	연구원은 구제 접수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인권침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				인권침해신고 센터 운영, 성희롱성폭력 신고채널 확대 갑질피해신고 센터(감사실) 운영
		19	연구원은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사건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인권침해 구제지침
		20	피해자가 연구원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					인권경영 이행지침
		21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인권경영 이행지침

분야	항목	번호	2022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진단결과					비고 (증빙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2. 고용상의 비차별	[2.1] 고용상 비차별	22	연구원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인사관리규칙), 공개채용 공고문(블라인드 채용 도입)
		23	연구원은 직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인사관리규칙), 직무기술서
		24	연구원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					복무규정(제7장 복리후생), 건강검진 수검현황(2020, 2021), 명절선물 지급현황(2020, 2021, 2022)
		25	연구원은 직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관리규정(배치), 무기계약직 직원 운용규칙(승진), 복무규정(교육), 직무역량강화 훈련 운용규칙(교육), 2021년도 교육훈련 실적
		26	연구원은 직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관리규정
	[2.2] 고용상 남녀 비차별	27	연구원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관리규정, 인사관리규칙
		28	연구원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					복무규정(제7장 복리후생)
		29	연구원은 직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관리규정(배치, 승진), 여성 재직현황(2022. 6. 기준), 복무규정(교육), 직무역량 강화훈련 운용규칙(교육)

분야	항목	번호	2022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진단결과					비고 (증빙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 2021년도 교육훈련 실적
		30	연구원은 직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관리규정
		31	연구원은 여성직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인사관리규정, 근로계약서 양식
	[2.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2	연구원은 비정규직 직원임을 이유로 연구원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복무규정(제7 장 복리후생), 기간제계약직 운용규칙, 임시직원 운용규칙, 건강검진 수검 현황표(2021), 명절선물 지급 현황표(2021)
33		연구원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연구원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기간제계약직 직원 운용규칙	
34		연구원은 공정한 임금 체계를 위한 보수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기간제계약직 직원 운용규칙, 보수규정	
	[2.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35	연구원은 외국인 직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					인권경영 이행지침
	[2.5] 근로자 인권보호	36	연구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통일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2022년도 직원 역량강화 계획(안), 2021년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37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통일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2022년도 직원 역량강화 계획(안), 2021년도 직장 내 괴롭힘	

분야	항목	번호	2022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진단결과					비고 (증빙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예방교육 실적
		38	연구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조성과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					복무규정 및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운영지침, 가정의날 공지, 가족친화인증서
3.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3.1] 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39	연구원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					인권경영 이행지침, 노동조합 가입정보 내역
		40	연구원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직원이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인권경영 이행지침, 단체협약
		41	연구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직원 모임을 위해 회의실,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	✓					단체협약
		42	연구원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노사협의회 개최 현황, 계획 및 결과보고 리스트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43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단체협약
		44	직원이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인권경영 이행지침, 단체협약
		45	직원이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인권경영 이행지침
		46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인권경영 이행지침, 단체협약
		47	직원이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					인권경영 이행지침, 단체협약

분야	항목	번호	2022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진단결과					비고 (증빙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48	연구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단체협약
		49	연구원은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단체협약
		50	연구원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					단체협약
		51	연구원은 근로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회사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					단체협약
		52	연구원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단체협약
4. 강제노동의 금지	[4.1] 강제노동 금지	53	연구원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인권경영 이행지침
		54	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직원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근로계약서
		55	연구원은 직원이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인권경영 이행지침, 복무규정, 근로계약서
		56	연구원의 직원은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무실을 떠날 수 있다.	✓					인권경영 이행지침, 복무규정, 근로계약서
		57	근로자는 퇴사 시, 사전통지 또는 의향 표시를 1개월 이전에 하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					의원면직 발령현황
5. 아동노동의 금지	[5.1] 연소자 고용금지	58	연구원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고졸 취업예정자 제외)	✓					인권경영 이행지침
		59	연구원은 서류를 통해 직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					인사관리규정, 인사관리규칙, 신원조사 의뢰 현황(2022), 결격사유 조회 현황(2022)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60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분야	항목	번호	2022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진단결과					비고 (증빙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경우의 조치								
6. 산업 안전 보장	[6.1] 사무실 안전	61	연구원은 사무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하도록 유지한다.	✓					2021년도 안전경영책임 보고서, 2022년도 안전경영계획, 2021년 상반기 소방실시공기청정기 설치 현황표
		62	연구원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상 이용 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					2021년 소방시설 점검요청서, 소방조달청사 2022년도 소방계획 수립 시행 보고, 소방시설 관리업무 점검 일지
		63	연구원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					2021년 상반기 소방실시공기청정기 설치 현황표, 2021년도 4/4분기 정수기 및 비데소독비 지급, 2022년도 3/4분기 정수기 소독비 지급
		64	연구원은 사무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2021년도 안전경영책임 보고서, 2022년도 안전경영계획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65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직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					장애인 화장실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66	임신을 한 직원이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복무규정, 2022년 상반기 특별휴가 사용 현황
		67	장애인들이 연구원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					장애인 경사로, 장애물 없는 출입문(배리어 프리)
	[6.3] 직원안전 및 건강지원	68	연구원은 근로자들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					2021년 통일연구원 비상·소방·방호 계획(안), 2022년 통일연구원 비상·소방·방호 계획(안), 소방훈련 시정각 교육 실시 공문
		69	연구원은 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한 건	✓					복무규정, 2021년 임직원 건강검진 실시

분야	항목	번호	2022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진단결과					비고 (증빙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강진단을 실시한다.						공람, 2022년 임직원 건강검진 실시 공람
	[6.4]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70	연구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단체협약
		71	연구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		단체협약
		72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					2021년도 안전경영책임 보고서, 2021년 통일연구원 비상·소방·방호 계획(안), 2022년 통일연구원 비상·소방·방호 계획(안)
7. 책임 있는 구매 담당 관리	[7.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73	연구원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 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				인권보호 약정서
		74	연구원은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인권보호 약정서
	[7.2] 모니터링 실시	75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관련자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	✓					인권경영 이행지침(제8조, 제20조)
		76	연구원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					인권경영 이행지침(제14조)
	[7.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77	연구원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별히 유의한다.	✓					인권교육 수료증(국가인권위원회)
		78	연구원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 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					인권교육 수료증(국가인권위원회)
8. 지	[8.1] 이해관계	79	연구원은 타인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					통일연구원 연구윤리

분야	항목	번호	2022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진단결과					비고 (증빙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연구주민의인권보호	자의 지적재산 권 보호		연구성과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자체점검 체계
9. 환경권 보장	[9.1] 환경경영 체제수립 및 유지	80	연구원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에 따른 차량2부제 설명자료
	[9.2] 비상계획 수립	81	연구원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2021년 통일연구원 비상.소방.방호 계획(안), 2022년 통일연구원 비상.소방.방호 계획(안), 소방훈련 시정각 교육 실시 공문
10. 소 비 자 인 권 보 호	[10.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82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					개인정보처리 방침 홈페이지 게시화면
		83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					개인정보처리 방침 중 개인정보책임 자, 담당자, 취급자 현황 게시 화면
		84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					개인정보수집 관련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안내, 동의서 양식 제출

붙임1-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내역

분야	항목	업무	인권영향평가 지표	진단결과					비고 (증빙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연구계획 수립	1	과제 배분	연구수행자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연구사업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					과제배분 관련 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연구위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
	2	과제 배분	연구과제 배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연구과제 배분 이의신청 관련 규정, 연구과제 배분 이의 신청 제도 운영 실적
[2] 연구과제 선정	3	심의	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기관/수행자 선정 시, 평가위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연구과제관리 위원회 명단
	4	선정	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연구사업현황 게시글, 홈페이지 사업실명제
[3] 연구수행	5	연구	연구 관련 설문 조사, 인터뷰 진행 시,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					생명윤리위원회 관련 규정 및 세부지침, 동의서 양식
	6	연구	연구 관련 설문 조사, 인터뷰 진행 시, 참가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					연구관련 인터뷰시 참가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활용
	7	연구	연구 관련 설문 조사, 인터뷰 진행 시, 수집된 참가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조치에 대하여 점검하고 관리감독 한다	✓					생명윤리위원회 관련 규정 및 세부지침, 연구진행계획서 양식
[4] 연구관리	8	평가	연구원은 과제 최종보고서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한다	✓					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관련 규정, 최종보고서 평가표
	9	평가	공동 연구시, 학술적 부가가치가 있는 현격한 기여를 한 외부연구진의 저자를 표시한다	✓					연구윤리규정, 저자기여확인서,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10	성과 활용	연구원은 연구과제 성과물을 연구회의 국가정책연구 포털(NKIS)에 의무적으로 등재하여 접근성을 보장한다.	✓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관련 규정, NKIS 과제 등록 화면
11	이의 제기	평가관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접수 채널을 운영한다.	✓					연구직(연구위원) 업무평가규칙, 연구지원직 업무평가규칙

끝